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480호)	김현의원	2025.1.14.	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2.24.) 상정 및 축조심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899호)	이정문의원	2025.2.4.	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2.24.) 상정 및 축조심사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4.)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2. 25.)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허가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재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7條(再許可 등) ① ~ ④ (생략) <신 설>	第17條(再許可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